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3.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2000년2월18일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따른 지하공동구의 위·수탁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도시내 지하공동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구 수용시설(제4조)
 - 전력용 케이블(한국전력공사 구미지점)
 - 통신용 케이블(한국통신)
 - 상수도 배수관(상하수도 사업소)
- 공동구관리협회의 구성·운영(제9조)
 -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공동구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 공동구 유지관련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 . 관할소방서 소속 공무원
 - .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소속 임·직원
 - .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동구의 관리위탁(제10조)

-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9조4항에 의하여 전기, 토목, 기계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전문관리업체 또는 구미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업체"라 함)에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점검(제11조)

-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수시점검(내부시설 매일 1회이상, 외부시설 주 1회이상)
 - . 정기점검(1년 1회이상)
 - . 특별점검(장마등 재해발생 우려가있을시)

3. 참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국무조정실 점검시 지자체 조례정비 지시(2000. 4.)
- 경상북도 합동점검 개선대책 추진지시(2003. 4. 22.)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방법, 공동구의 점용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비용부담) ①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③공동구 점용예정자(이하 “점용예정자”라 한다)의 비용부담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비용을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④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이 있은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령” 제3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 전 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구의 수용) ①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력용 케이블
2. 통신용 케이블
3. 상수도관
4. 전 각호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시장은 새로이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후 지체없이 점용 예정자 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점용 예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기와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1항의 각호 이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 방법 및 공사 기간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 등)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점용료) ①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시적 점용의 점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부담금을 포함한다.)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①시장 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없이 공동구내의 출입을 할 수 없다.

②공사의 시행, 점검등을 위하여 공동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출입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관리자는 공동구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징수) ①시장이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 시장이 조정 부과한다.

②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6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④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공동구관리협회의 구성·운영) ①시장은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공동구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2. 관할소방서 소속 공무원
3.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소속 임·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협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시장은 협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구의 관리위탁) ①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토목, 기계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전문관리업체 또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위탁·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한다.

제11조 (점검) ①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시점검은 내부시설은 매일 1회이상, 외부시설은 주 1회이상으로 점검한다

③정기점검은 관리기관, 유관기관, 점용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년 1회이상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특별점검은 장마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에 필요한 경우 점검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공동구 시설물 운영에 대해 조사, 확인,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확인,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공동구의 점용,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방법, 공동구의 점용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시장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공사비, 부대공사비, 측량 및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공사 잡비 및 사무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비용의 부담) ①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신 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④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후 지체없이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점용예정면적 및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점용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 착수전에 부담금의 2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을 공동구 설치 완료전에 완납하여야 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이를 정산처리 한다.	④시장은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이 있은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 전 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구에 수용) ① (생략) 1. (생략) 2. <u>체신용 케이블</u> 3. (생략) 4. 전 각호의 <u>통로 구내 주정 시설 및</u>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시장은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후 지체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 (공동구에 수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통신용 케이블</u> 3. (현행과 같음) 4. 전 각호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시장은 “새로이” 공동구의 설치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허가 등) (생략)	제5조(점용허가 등) (현행과 같음)
제6조(점용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시적 점용의 점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생략)	제6조 (점용료) ①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시적 점용의 점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공동구의 관리) 시장이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 시장이 조정 부과한다.	제7조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①시장 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없이 공동구내의 출입을 할 수 없다. ②공사의 시행, 점검등을 위하여 공동구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출입 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관리자는 공동구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징수) ①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예에 의한다.	제8조 (징수) ①시장에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 시장이 조정 부과한다. 현행①항은 ②항으로 ②항은 ③항으로 ③항은 ④항으로 한다
제9조(공동구 안전) ①시장의 사전승인없이 공동구내의 출입을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①시장은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1.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2. 관할소방서 소속 공무원
	3.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소속 임·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제10조 (공동구의 관리위탁) ①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토목, 기계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전문관리업체 또는 구미시설관리공단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위탁·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1조 (점검) ①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시점검은 내부시설은 매일 1회이상, 외부시설은 주 1회이상으로 점검한다. ③정기점검은 관리기관, 유관기관, 점용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년 1회이상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특별점검은 장마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에 필요한 경우 점검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생략)	제12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공동구 시설물 운영에 대해 조사, 확인,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확인,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1995.01.01 조례제010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 설〉</u>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